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11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오진욱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1. 4. 접수 제1049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176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 주식회사 C와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액 150,000,000원, 이자율 연 1.98%(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연 12%로 하는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C은 2021. 8. 23.부터 위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후 원금과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6. 28.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변제기한을 2018. 8. 28.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B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들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1. 4. 주문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B로부터 2018. 7. 26. 150만 원, 같은 해 8. 28. 150만 원, 2019. 12. 29. 200만 원, 2020. 1. 20. 200만 원, 같은 해 1. 28. 150만 원, 같은 해 2. 3. 150만 원, 같은 해 2. 20. 300만 원, 같은 해 2. 28. 150만 원 등 8회에 걸쳐 1,450만 원을 이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7. 광주지방법원 2022카단50018호로 이 사건 근보증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3,705,094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2018. 6. 28. 기준 미변제 대출금은 150,000,000원이며, 2022.

4. 1. 기준으로 이 사건 근보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35,070,438원이다.

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가 소유한 부동산 내역은 별지 2 부동산 내역 표 기재와 같고, B의 소극재산은 별지 3 소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497,600,000원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억 5,0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2022. 3. 11. 기한이익 상실 처리를 하였는바 그 이전인 2018. 6. 28. 피고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21.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근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보증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B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2020. 2. 28. 지급한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될 즈음인 2021.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D,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B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근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그리고 실제로 주식회사 C은 2021. 8. 23.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